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정애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04. 13. 공포, 2021. 07. 14. 시행)됨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설치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 조건,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업무를 환경청장에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관련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설치계획 제출 서류, 포함 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협의 기관 등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 승인시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토록 하며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5 신설)
- 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권한을 유역·지방 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 위임(안 제63조제2항)
-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서류 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안 제66조제1항 및 제3항)

라. 규제의 재검토 사항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추가
(안 제66조의2제9호 신설)

마.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업무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3제6의4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5(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제출) ①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58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를 받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설계도서
2. 공사 예정표
3. 자금계획서(자금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 법 제58조의11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종류, 설치비용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58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를 변경해야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법 제58조의11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법 제58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기관

제63조제2항제4호의20 및 제4호의21을 각각 제4호의22 및 제4호의2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0 및 제4호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0. 법 제58조의11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의21. 법 제58조의1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

제66조제1항제8호의5 중 “전기자동차 충전”을 “저공해자동차 중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52조의5제4항에 따른 설치계획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제6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의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58조제11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 2021년 07월 14일

제66조의3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0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2조의5(수소연료공급시설 설</u> <u>치계획 제출) ① 법 제58조의11</u> <u>제1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제</u> <u>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u> <u>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u> <u>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u> <u>법 제58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u> <u>른 인·허가를 받기 전에 환경</u> <u>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계획의 승</u> <u>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전자</u> <u>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u> <u>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u> <u>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u> <u>한다.</u> <u>1. 공사 설계도서</u> <u>2. 공사 예정표</u> <u>3. 자금계획서(자금투자계획, 재</u> <u>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u> <u>② 법 제58조의11제2항제4호에</u> <u>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이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종류,</u> <u>설치비용 및 사업기간에 관한</u> <u>사항을 말한다.</u> <u>③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u>이란 법 제58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u>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⑤ <u>법 제58조의11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u> 1. <u>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u> 2. <u>법 제58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기관</u>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제4호의16부터	② ----- ----- -----

제4호의19까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4의19. (생략)

<신설>

<신설>

4의20. · 4의21. (생략)

5. ~ 13. (생략)

③ (생략)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 8의4. (생략)

8의5.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 -----

-----.

1. ~ 4의19. (현행과 같음)

4의20. 법 제58조의11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의21. 법 제58조의1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

4의22. · 4의23. (현행 제4호의20 및 제4호의21과 같음)

5.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

-----.

1. ~ 8의4. (현행과 같음)

8의5. -----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
산망의 설치·운영

8의6. ~ 10.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
경협회에 위탁한다.

1. (생략)

<신설>

2.·3. (생략)

④·⑤ (생략)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
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저공해자동차 중 법 제2조제1
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연료
공급시설의 -----

8의6. ~ 10. (현행과 같음)

11. 제52조의5제4항에 따른 설
치계획 제출서류 검토 및 현
지 확인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저
공해자동차 중 법 제2조제16
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연료공
급시설의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

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신 설>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3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
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
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
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
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6의3. (생략)

<신 설>

_____ 해야 _____

_____.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58조제11에 따른 수소
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
인 : 2021년 07월 14일

[illegible]

1.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수
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
인에 관한 사무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연 락 처	(044) 201 - 6883